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2. 5.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안대국 의원 외 5인
- 발의일자: 2019. 11. 25.
- 회부일자: 2020. 1. 23.
- 검토기간: 2020. 1. 23. ~ 2020. 2. 3.

### 2. 제정이유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 (안 제4조~안 제8조)
-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 라. 포상(안 제12조)

## 4.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야기되는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취지 (안 제1조)에서,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안 제2조제1호)의 자녀 중, 세 번째 자녀(첫째, 둘째 자녀는 제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안 제5조), 1회(입학년도 한해)에 한해 2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안 제6조)하는 한편, 동 다자녀 가정이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일부를 감면(안 제4조제2호)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출산 장려를 통한 노동 인구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는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방식(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 사료됨.

### ① 출산 장려 정책 효과의 한계성 여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자녀에 한해 중학교 입학 시, 1회 20만원 지원은 결국 세 번째 자녀가 최소 13세 이하가 될 때까지 구에 거주하든지, 또는 타 지역에서 다자녀 가정을 이룬 후 세 번째 자녀의 중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구로 전입토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 바, 이는 조례 제명(題名)에 포함된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를 얻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② 셋째 자녀, 중학교 입학 시 1회 한정 지원의 적절성 여부

최근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3년(2016년~2018년) 달서구 거주 3자녀(이상) 가구 자체가 매년 350여 가구씩 수준 감소 추세. 동 현실(및 향후 다자녀 가정의 지속적 감소 현상)을 고려할 때, [셋째 자녀 중학교 입학 시]로 굳이 한정할 실익은 없다고 사료 됨. 일례로 [셋째 자녀 유치원 입학 시]로 한정1)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원하기에] 구 예산 부담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

1) 참고 :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되,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 (4단계)별로 최초 입학시(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③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최소 거주 기간 미 규정의 적절성 여부

현재 달서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제3조)”로 하여, 구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안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안 제5조)”로 하여 **최소 거주 기간 제한이 없는 바**, 최소 거주기간을 규정함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

### ④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

현재 대구광역시와 시 교육청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비(학자금)지원<sup>2)</sup>을 하고 있는 바, 중복 지원 가능성 여부(특히 시 교육청 조례 제4조제2항 참고)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

---

####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3. 어린이 안심보험료 : 어린이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4.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5.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등 비용지원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의 분담) 지원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가 100분의 70을, 자치 구·군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 참고 자료

### 1. 2020회계연도 구 예산안에 반영(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

비용추계: 80,000천원(2020년의 경우, 구비 100%)

- 산출근거: 약 400명(2007년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 200천원 = 80,000천원
  -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현황(※ 해당부서 제출 자료)

구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u>2007</u>
출생아 수(명)	223	342	381	455	454	386	481	447	462	356	347	<u>439</u>

### 2. 국가 통계 자료

#### 【달서구, 출산순위별 출생자 현황 (2007년에서 2018년)】

구분(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5,227	4,920	4,976	5,404	5,333	5,463	5,097	5,025	5,049	4,504	3,706	3,041
1자녀	2,691	2,662	2,669	2,812	2,795	2,770	2,667	2,660	2,556	2,381	1,886	1,516
2자녀	2,052	1,858	1,915	2,093	2,084	2,205	2,040	1,903	2,035	1,736	1,458	1,242
3자녀 이상	439	347	356	462	447	481	386	454	455	381	342	223
미상	45	53	36	37	7	7	4	8	3	6	20	60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달서구, 자녀수별 가구 수 현황 (2016년에서 2018년)】

구분 (가구 수)	2016	2017	2018
총계	69,330	65,033	61,537
1자녀	25,420	24,101	23,221
2자녀	37,619	35,005	32,759
3자녀	5,934	5,588	5,215
4자녀	318	303	303
5자녀 이상	39	36	39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